

■ 관보규정 시행규칙 [별표 3]

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(제6조 관련)

편집 구분	게재 내용
헌법란	헌법개정 공포, 헌법개정안 공고 등
법률란	법률의 공포
조약란	조약의 공포
대통령령란	대통령의 공포
총리령란	총리령의 공포
부령란	부령의 공포
훈령란	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발령
고시란	법령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,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공고란	법령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,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국회란	국회규칙과 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
법원란	대법원규칙과 법원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
헌법재판소란	헌법재판소규칙과 헌법재판소 결정, 그 밖에 헌법재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
선거관리위원회란	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선거·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
감사원란	감사원규칙과 심사청구 결정, 그 밖에 감사원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
국가인권위원회란	국가인권위원회규칙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
지방자치단체란	지방자치단체의 고시·공고사항
인사란	국가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, 승진, 전직, 기관 간 전보, 전출, 전입, 정년퇴직, 명예퇴직 및 추서(追敍: 죽은 뒤에 계급이나 직급을 올리거나 훈장 등을 주는 것) 등의 인사발령 사항
상훈란	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·포장의 서훈, 「정부 표창 규정」에 따른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
기타란	대통령·국무총리 지시사항, 정부의 행정지침으로서 각 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,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